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24 선고 2020가단558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병희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변론 종결 2021. 1. 13.

판결 선고 2021. 3.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1. 접수 제1163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와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금액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비율)
1	E	2014. 10. 28	2024. 10. 25	7억 9,000만 원 (일반자금)	7억 1,100만 원 (대출금의 90%)
2	F	2015. 6. 2	2020. 3. 20	3억 원 (일반자금)	2억 5,500만 원 (대출금의 85%)
3	G	2015. 12. 14	2019. 12. 6	2억 원 (일반자금)	1억 7,500만 원 (대출금의 85%)
합계				12억 9,000만 원	11억 3,600만 원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등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C와 연대보증인 B는 원고로부터 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보증금액에 대한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제6조 제1항),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와 연대보증인 B는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고가 정하는 율을 정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다. C의 채권자 H은 C 소유의 경산시 I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5. 1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2017카단1432), 2019.5. 22.에는 위 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C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6. 12.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19카단33043).

라. 원고는 2020. 4.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380,221,8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20. 4. 20. 대구지방법원에 C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위약금 및 대지급금(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2020. 12.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838,550원 및 그 중 380,221,858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B와 피고는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9. 2. 1. B의 1/2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B와 피고는 2019. 12. 20. 대구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9. 12. 2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D은행에 대한 36,844,000원의 대출금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8,980,000원의 대출금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내지 7, 9, 10, 1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K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C가 금전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그 소유 공장대지 및 공장건물이 가압류되는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B가 사전구상금채무 내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B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성립하고, B는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하며, 이때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B와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로 서 협의이혼하기로 상호 합의가 되었으나 자녀 입시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은 나중에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와 같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미리 재산분할을 한 것에 불과한 데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와 피고가 협의이혼하기 약 10개월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문현정